



2024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(품목) 다빈도 Q&A



Q1 품목과 제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▶ 품목은 동일한 사용 목적, 기능 등을 수행하는 <u>물품의 집합체</u> 제품은 집합체에 속하는 물품입니다.

예시) (품목) 핸드폰 (제품) S사 S20, S21, A사 A12, A13 등

Q2 제조·수입업체가 아닌데 신규 품목 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?

▶ 가능합니다. 기존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.

Q3 복지용구로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- ▶ 기존에 급여 중인 품목 이외에 공고의 품목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▶ 단, <u>응용 소프트웨어(application software)</u>* 사용 품목, 개인 맞춤형 품목은 신청이 제한됩니다.
 - ※ 하드웨어 기반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인 임베디드(embedded) 소프트웨어와 구분되는, 운영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

서류 제출시 접수 기간 내에 우편이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망문이나 메일로도 접수 가능한가요?

- ▶ 신청 접수는 **'등기우편' 으로만 가능**하며, 방문, 팩스, 메일 등의 **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**.
- ▶ 서류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하므로, 우편물 도착 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.

Q5 신청 품목의 견본품 소개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?

- ▶ 업체명 및 제품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2분 이내로 제작하셔야 합니다.
- ▶ 공단의 인터넷 환경 특성상 외부 경로를 거쳐 실행될 경우 재생이 안될 수 있으니, 반드시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Q6 신청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
- ▶ 별첨된 '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(품목) 서류 작성 방법'에 각 서류별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서류 작성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는 담당자가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니 작성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서류 작성 시 공고된 서식의 임의 변경, 수정, 편집은 불가합니다.

Q7 서류 제출시 일부 자료를 누락했는데 추가 제출이 가능한가요?

▶ 공단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은 불가하오니 제출 시 서류의 구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Q8 규격명이나 규격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- ▶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 표준인증(https://www.standard.go.kr)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▶ 신청 품목 관련 규격(시험)·표준·인증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문 상담 창구인 '1381 인증표준정보센터'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Q9 견본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
▶ 아닙니다. 다만 제출한 견본품 관련 동영상만으로 사용방법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견본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Q10 보완요청이나 심사 결과는 어떻게 통보되나요?

- ▶ 품목 선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심사 결과는 메일과 유선으로 통보(안내)하오니 신청서 작성 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작성 오류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Q11 품목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요?

- ▶ 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[별표 17] 및 [별표 19]에 따라 신청한 품목의 급여 적합성, 안전성, 편의성, 재정영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- ▶ 평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[알림·자료실 → 복지용구 안내 → 복지용구 공지사항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Q12 신청 품목이 급여결정 되면, 해당 제품도 급여화가 되는 건가요?

▶ 아닙니다. 품목이 고시된 이후에 신규 제품 신청 접수가 별도로 진행되므로, 그때 신규 제품 급여결정 신청하셔야 합니다.

신규 급여결정 신청 이후 결과통보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Q13 걸리나요?

▶ 신청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,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.

건본품을 제출했을 때, 심의 완료 후 견본품 회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가 있나요?

- ▶ 안내하지 않습니다. 제출한 견본품은 신규 급여결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.
- ▶ 기한 내 미회수 시 공단에서 자체 폐기할 예정이오니,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담당자에게 연락 후 직접 방문·회수하시기 바랍니다.